사업방법서 별지

(중장비안전보험)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종합)/기업성·가계성

2. 보험의 목적
   가. 피보험자의 신체
   나. 법률상의 배상책임
   다. 개인 및 기업관련 각종 비용손해

3. 보험기간
 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 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  가.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   나.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
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-77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자특성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"중장비안전보험 개별 할인할증 기준"에 따른다.

6. 기타 필요한 사항
   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
   나. 기본계약의 담보를 제외하여 특약의 내용만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없다.